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대덕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7.
판 결 선 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과세내역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대여업자로,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품(자동차, 건설기기 등)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리스료를 받는 시설대여업(리스)과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11. 16. A라는 상호로 리스대행업을 영위하는 B[1]과, 원고의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일부 사무업무를 B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B이 리스이용자로부터 할부금융신청서, 약정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취득세 납부업무도 위임하였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리스이용자들과 <표 1>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리스이용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표 1> 리스계약체결내역

(단위 : 원)

순번	계약일자	차종	차량번호	리스이용자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원가	월 리스 이용료
1	2011. 5. 25.	벤츠 E300	C	D	60,000,000	1,746,862
2	2011. 7. 6.	BMW 740	E	F	100,000,000	2,937,499
3	2011. 6. 20.	BMW 520	G	H	60,000,000	1,746,862
4	2011. 6. 30.	벤츠 S600	I	J	90,000,000	2,643,749
5	2011. 10. 31.	푸조 508	M	N	23,000,000	675,624

1) 갑 제3호증에는 원고와 할부금융제휴점약정을 체결한 계약명의인이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2호증의4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명 : L)인 사실이 인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6	2011. 9. 29.	BMW 520	O	P	47,500,000	1,406,506
7	2011. 9. 20.	벤츠 S500	Q	H	54,000,000	1,600,393
8	2011. 10. 28.	BMW X5	R	S	45,000,000	1,321,874

다. B의 취득세 신고 · 납부와 취득세납부영수증 위조

1)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지방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한 시가표준액은 아래 <표 2> '시가표준액'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표 2> '신고과세표준'란 기재 각 금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 납부한 후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B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 납부 당시 피고에게 <표 2> '신고과세표준'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와, 위 '신고과세표준'란 기재 각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 또는 계정별원장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표 2>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순번	계약일자	차종	차량번호	신고 과세표준	영수증에 기재된 취득세 납부내역	시가표준액
1	2011.5.25.	벤츠 E300	C	2,500,000	4,340,000	41,599,000
2	2011.7.6.	BMW 740	E	10,000,000	8,050,000	88,032,000
3	2011.6.20.	BMW 520	G	6,985,600	4,340,000	43,124,000
4	2011.6.30.	벤츠 S600	I	20,000,000	8,400,000	98,512,000
5	2011.10.31.	푸조 508	M	8,120,000	2,660,000	37,910,000
6	2011.9.29.	BMW 520	O	10,000,000	3,710,000	43,124,000
7	2011.9.20.	벤츠 S500	Q	10,000,000	4,760,000	35,180,000
8	2011.10.28.	BMW X5	R	10,000,000	3,990,000	33,913,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표 3> 취득세납부내역

(단위 : 원)

순번	차량번호	취득세 납부일자	취득세 납부액
1	C	2011. 5. 27.	175,000
2	E	2011. 9. 8.	700,000
3	G	2011. 6. 27.	488,990
4	I	2011. 7. 6.	1,400,000
5	M	2011. 10. 26.	568,400
6	O	2011. 9. 30.	700,000
7	Q	2011. 9. 21.	700,000
8	R	2011. 10. 21.	700,000
합계			5,432,390

2) 그런데 B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액이 <표 2> '영수증에 기재된 취득세 납부내역'란 기재 각 금액으로 기재된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는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원가와 동일한 금액이다)을 지급하였다.

<표 4>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순번	차량번호	지급일자	금액
1	C	2011. 5. 27.	60,000,000
2	E	2011. 9. 9.	100,000,000
3	G	2011. 6. 29.	60,0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4	I	2011. 7. 7.	90,000,000
5	M	2011. 10. 31.	23,000,000
6	O	2011. 10. 11.	47,500,000
7	Q	2011. 9. 23.	54,000,000
8	R	2011. 10. 28.	45,000,000

마. 피고의 제1차 취득세부과처분

1) 대전광역시장은 2013. 7. 2. 피고에게 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차량운반구계정(현금, 미지급금계정 포함), 감가상각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표 1>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원가'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부회계전표(을 제3호증의2 내지 9)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과소신고 · 납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표 2> '시가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신고과세표준'란 기재 각 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1 과세내역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취득세부과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원고는 2013. 12. 6. 제1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 2. 기각되었다.

사. 피고의 제2차 취득세부과처분

대전광역시장은 2015. 2.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별지 1 과세내역표 순번 1, 2, 3, 6, 7, 8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소부과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2. 10. 별지 1 과세내역표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자동차리스계약과 관련된 내부회계전표(을 제3호증의2, 3, 4, 6, 7, 8)에 기재된 각 금액(이는 <표 1>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원가'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위 각 금액과 <표 2> '시가표준액'란 기재 각 금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9호증, 을 제1, 2, 4, 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위임받은 B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원고에게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처럼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B이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고, B이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B의 독자적인 불법행위이므로,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B이 신고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근거자료로 제출한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와 계정별원장은 외관상 위조된 서류임이 명백함에도,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위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은 B과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1, 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제1, 2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는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차량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자동차 중 별지 1 과세내역표 순번 1, 4, 8 기재 각 자동차는 교통사고, 침수사고 등으로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시가가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오히려 그 각 시가는 당초 B이 신고한 가액에 부합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 각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과세근거로 삼은 원고의 금융리스채권 법인장부(을 제3호증의2 내지 9)는 원고의 리스채권금액을 기재하는 장부인데, 위 리스채권금액은 리스이용자에 대한 대출금이지 이를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제2처분을 하였으므로 제2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4) 피고는 제1처분을 한 이후 제1처분의 부과처분의 전제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제2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제1, 2처분 중 취득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B이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출금전표, 계정과목명세서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위조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 납부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B의 취득세 과소신고 · 납부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또한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2, 3, 을 제21호증의2, 3,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출금전표, 계정과목명세서, 계정별 원장이 위조되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서류에 기재된 금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 납부를 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담당공무원에게 취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법인장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해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미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은 당초 과소신고·납부 당시 담당공무원의 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미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밝혀지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가격이 내부출금전표(을 제3호증의2 내지 9)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므로, B이 신고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허위임이 밝혀진 후 피고가 원고의 내부출금전표 등을 근거로 하여 시가표준액과 당초 B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미신고세액을 징수한 제1처분과,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상회하는 별지 1 과세내역표 순번 1, 2, 3, 6, 7, 8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미신고세액을 징수한 제2처분 중 각 취득세 본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제1, 2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대리인인 B이 취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한 후 정당하게 산출된 취득세액을 납부한 것처럼 취득세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인 원고가 취득세액을 신고 · 납부할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은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건조 ·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 구조 · 용도 · 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 1. 현재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는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이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취지는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기준과 도지사가 이를 변경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의 종류 · 구조 · 용도 · 경과연수 등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기재와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각 과세대상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 시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실상 현황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을 취득하면서 사실상 지불한 가액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도인에게 내부출금전표(을 제3호증의2 내지 9)에 기재된 각 금액(위 각 금액은 원고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작성된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원가'란 기재 각 금액과도 일치한다)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내부출금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고 한 제1, 2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자동차매도인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의 성질이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나,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회사의 재원으로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원고가 자동차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금으로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불한 가액에 해당하고, 이를 리스이용자에 대한 대출금으로 볼 수는 없다).

4) ④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과 B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1처분 이후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더 이상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신뢰가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별지 1)

과세내역표

순번	처분청	처분일자	차량번호	취득세 본세	취득세 가산세	취득세 합계	비고
1	대덕구청	2013. 9. 10.		2,736,930	1,182,890	3,919,820	
2	대덕구청	2013. 9. 10.		5,462,240	2,190,350	7,652,590	제1차 부과처분 (조세심판 청구 경유)
3	대덕구청	2013. 9. 10.		2,529,688	1,069,782	3,599,470	
4	대덕구청	2013. 9. 10.		5,495,840	2,307,690	7,803,530	
5	대덕구청	2013. 9. 10.		2,085,300	805,550	2,890,850	
6	대덕구청	2013. 9. 10.		2,318,680	914,480	3,233,160	
7	대덕구청	2013. 9. 10.		1,762,600	699,390	2,461,990	
8	대덕구청	2013. 9. 10.		1,673,910	649,640	2,323,550	
취소 청구 대상 세액					9,819,772	33,884,960	
9	대덕구청	2015. 2. 10		1,288,070	758,020	2,046,090	제2차 부과처분 (조세 심판청구 미경유)
10	대덕구청	2015. 2. 10.		837,760	466,630	1,304,390	
11	대덕구청	2015. 2. 10.		1,181,320	683,150	1,864,470	
12	대덕구청	2015. 2. 10.		306,320	167,490	473,810	
13	대덕구청	2015. 2. 10.		1,317,400	728,250	2,045,650	
14	대덕구청	2015. 2. 10.		776,090	420,860	1,196,950	
취소 청구 대상 세액					3,224,400	8,931,360	
전체 취소 청구 대상 세액					13,044,172	42,816,3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5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끝.